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9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3348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피 고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
변 론 종 결 2024. 6. 27.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7,990,182,082원, 지방교육세 799,018,210원, 농어촌특별세 399,509,1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6. 3. 2.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2016. 3. 11. 각종기계, 기기와 그 부속품의 제조, 설치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9.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B로부터 ○○국가산업단지 내 ○○시 ○○구 D 외 7필지에 있는 아래와 같은 공장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취득세 10,653,576,100원, 지방교육세 1,065,357,420원, 농어촌특별세 532,678,630원 합계 12,251,612,150원을 납부하였다.

(단위: m ²)			
주소	지번	토지 면적	건축물 연면적
○○도 ○○시 ○○구 E 동	D	64,584.30	82,770.67
	F	21,848.10	
	G	9,657.50	
	H	38,718.10	
	I	13,318.50	13,380.01
	J	330.60	-
○○도 ○○시 ○○구 K 동	L	92,392.30	20,306.18
	M	18,214.80	720.00
합계		259,064.20	117,176.86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이 증축하였다.

증축내용	증축 연면적(m ²)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방풍실, 옥외변전실, 창고 캐노피 확장	159.66	2016. 7. 15.	2016. 9. 9.
자재창고	1,984.13	2016. 9. 28.	2017. 3. 27.
외자창고	563.23	2016. 11. 11.	2017. 3. 17.



공장	7,178.61	2017. 11. 27.	2018. 7. 31.
s-site lay out 재배치	1,225.27	2017. 12. 15.	2018. 3. 29.
창고	166.30	2018. 9. 12.	2019. 1. 8.
자재창고	1,281.89	2018. 11. 5.	2019. 2. 11.

라. 원고는 2020. 8. 11.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세금 중 별지2 '경정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합계 7,990,182,082원, 지방교육세 합계 799,018,21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399,509,140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22.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15.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고, 감사원은 2023. 8. 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에는 '증축'을 포함하고, '취득'에는 승계취득을 포함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B로부터 승계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기존에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득 목적이 새로운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 취득 이후 일부 증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소유자인 B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 및 증축하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이를 승계한 원고에게 다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여 일부 증축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증축이 건축법상 건축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소규모로 증축한 경우는 산업용 건축물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감면대상인 건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증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증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2) 증축한 경우와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경감될 수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건축'에는 '증축'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취득'에는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최초취득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조항은 지방세 경감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위 건축, 취득,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¹⁾에 따라 위 건축, 취득, 부동산의 뜻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1호),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제2호),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의 '건축'을 신축으로, '취득'을 원시취득 또는 최초 취득으로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경감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대지 상태이거나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존에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물과 함께 승계취득한 후 아주 소규모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취득세 전부를 감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산업단지 내 산업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이를 본래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시설의 유치, 확충이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경우에 경감되는 취득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논리필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 경감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취득세의 경감 여부 및 그 범위 등

원고가 2016. 4. 29.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이후 2016. 7. 15.부터 2018. 9. 12.까지 7차례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을 신축 내지 증축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항, 구 ○○○도 도세 감면 조례(2016. 11. 3. ○○○도 조례 제420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가 경감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취소되어야 하는 취득세 등의 범위는 별지2와 같이 원고가 경정청구를 구한 금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

판사 백○○

판사 강○○



별지1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끝.

■ 구 ○○○도 도세 감면 조례(2016. 11. 3. ○○○도 조례 제420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산업·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4항 및 제78조 제8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대상과 그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71조 제2항 및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끝.